

事者의 長期間에 걸친 力量集中이 必要한데, 이는 開發能力 不足보다는 類似 先例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3. 獨島 領有權問題의 國際法的 考察

해사법학과 윤 병 두
지도교수 김 영 구

최근에 들어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10월 26일 發效됨으로써 세계의 연안국들이 앞다투어 배타적경제수역을 宣布하며 해양의 管轄權을 확대해 감으로써 인접국가간 島嶼 領有權을 두고 紛爭이 深化되어 가고 있다. 동북아의 경우 북방4도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간, 조어도/센카꾸를 두고 중국과 일본간,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간의 도서영유권 논쟁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한일간 영유권 논쟁이 일고 있는 독도는 울릉도의 附屬島嶼로서 于山國이 新羅에 復屬된 以來 高麗, 朝鮮을 거쳐 現在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52년 1. 18. 한국의 平和線 宣布以後부터 자국의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욱이 1996년 이후부터는 종래의 현상유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直線基線의 宣布' '韓國漁船拿捕'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독도로부터 관할범위를 기산하겠다는 의도를 공표하는 등 독도문제를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문제로 대두시켜 한국의 영역주권을 정면으로 집요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현상유지적, 회피적 자세로 미온적 정책을 펼치고 있어 급기야는 1998년 9월 24일 韓日漁業協定이 최종 타결시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치 못하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자원보존을 위한 공동적 잠정조치를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국의 獨島 爭取를 위한 段階的 戰略에 휘말려 가고 있으며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되어가고 있는 바 이에 '99년 韓日漁業協定'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유권에 관한 既存의 독도관련 문헌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리하여 독도영유권 논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로서 일본 백기주태수가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한 안용복사건과, 독도와 울릉도는 고려의 영토라고 밝힌 1667년 일본 덕천막부에서 판찬한 '隱州視聽合紀', 독도를 조선에 속한 것으로 취급한 일본해군성수료부의 '일본수로지' 제6권(1911년), 제10권(1920년),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1933년), 역사지리(제55권, 제6호)에 취급된 오게바따 셋고의 논문 '일본해에 있는 죽도의 일한관계에 대하여'(1930년), 시마 가즈모리의 '신편일본역사지도'(1933년), 샤꾸모 순나이의 '조선과 만주안내'(1935년), 일본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의 '지도구역일람도'(1936)등을 들 수 있으며 국제법적 근거로서는 1905년 일본 도근현의 독도편입의 부당성,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선언과, 전후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항복조건을 규정한 포츠담선언, 일본의 제소도의 귀속문제에 대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총사령부의 일연의 조치, SCAPIN 제677호, 대일강화조약의 체결과정, 내용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독도는 한국의 고유의 영토임에 틀림이 없다. 뿐만아니라 일본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일본인들 80%가 독도, 즉 일본명으로 죽도라는 섬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며 중국과의 조어도 문제와 러시아와의 북방4도 문제와는 달리 일부 서해안의 어민이나 극우주의자외에는

일본인들 대다수가 독도가 일본의 도서라는 영유권식이 희박함에도 일본에서는 自家撞着의 고유영토설과 선점이론에 바탕을 두고 독도영유권 논쟁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다. 그렇다하여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있는 일본에 대해 독도사수를 위해 극단적인 대처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도영유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과 우리의 대응자세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한국측의 자세정립단계」로서 회피적, 현상유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적 입장을 정립하는 단계이다. 즉 일본으로 하여금 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과 결연한 의지를 빨리 이해시키도록 한 다음,

두 번째로 「사회적, 실체적 여건 조성단계」로서 한반도에 대한 과거 일본의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 자신이 올바르게 이를 반성하고 한국을 대등하고 자존심 있는 善隣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게 하고 정치, 경제, 군사 및 문화의 모든 국면에서 양국이 투명하게 서로를 믿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독도문제에 대한 실체적 접근단계」로서 독도문제연구의 조직화, 활성화로 객관적인 연구와 홍보를 통해서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의 인식을 전환토록한 후

네 번째로 독도영유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종 접근단계로서 한국과 일본간의 현안의 과제에 이미 대두되어 있는 EEZ경계획정에서 이 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상환적 대가관계로 한국은 EEZ관할수역 경계획정에 있어서 이 독도의 가치를 半分 또는 생략해주는 내용의 양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독도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을 통한 합의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지와 관련하여 독도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대응자세를 몇가지 제안하면

첫째, 한국정부는 일본의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독도문제 제기에 대해 더 이상 회피적, 현상유지적 정책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임에 틀림이 없고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하여 여기에 안주해서는 아니 되며 국민적 정서를 미루어 보더라도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보는 듯한 소극적인 독도정책을 전개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한국정부도 과감히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입법, 예산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민이 糊塗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리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독도와 바다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절실히 요망된다. 국민이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책과 해양수산정책이 더욱이 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바다로 눈을 돌려 국가의 발전은 물론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